

의안 번호	제 277 호
의결년월일	1995. 5. 27. (제 33 회)



고성군공인조례증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년월일	1995. 5. 10

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7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'95. 5. 10.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

현행 고성군공인조례중 어려운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바로잡아 그 뜻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하고 중복조항 및 내용이 부실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2. 본 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제1조중 "관수"를 "보관"으로 함.

나. 제2조 3항중 "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"를 "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수 있다. 이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"로 함.

다. 제11조 3항: 제2항 공인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를 삭제함.

라. 제13조 "공인관수자" 를 "공인보관자" 로 함.

마. 제14조 "관수" 를 "보관" 로 함.

바. 제15조중 "관수" 를 "보관" 로 함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. 구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공인(사업소, 읍면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)의 <u>규격, 관수방법, 공고요령</u>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, 보관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공인의비치사용) ①~ ② (생략) ③군수, 사업소장, 읍.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"<u>민원실전용</u>"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공인의비치사용) ①~ ② (현행과 같음) ③군수, 사업소장, 읍.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<u>민원실전용 공인</u>을 비치 사용할수 있다. 이경우 "<u>민원실전용</u>"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
<p>제11조(공인의폐기) ①~ ② (생략) ③제2항 공인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공인의폐기) ①~ ② (현행과 같음) ③항 삭제</p>
<p>제13조(공인<u>관수자</u>) ①공인의 <u>관수자</u>는 군수가 임명한다. 다만,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직에 임명된자가 <u>관수자</u>가 된다. ②팩시밀리를 통한 제증명민원발급용 공인증 군에 비치하는 읍면장의 공인은 민원담당계장이 읍면에 비치하는 군및 타읍면의 공인은 <u>호병계장</u>이 <u>관수자</u>가 된다.</p>	<p>제13조(공인<u>보관자</u>) ①공인의 <u>보관자</u>는 ----- ----- ----- -----<u>보관자</u>가 -----, ② ----- ----- ----- -----<u>보관자</u>가 ----- -----.</p>

신 . 구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14조(관수방법)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.</p> <p>제 15조(찍는위치)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후 날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②생략</p>	<p>제 14조(보관방법)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 15조(찍는위치)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----- -----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